

「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구미보건소장 최 현 주

나. 제안이유

-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(2020.1.1.~2024.12.31.)이 만료됨에 따라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-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 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 무 명: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

- 추진근거

- 1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- 2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
- 3) 「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 제5조
- 4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- 위탁사무

- 1) 보건복지부 「정신건강사업 안내」에 따른 정신건강사업
- 2)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
- 3) 정신건강증진사업
- 4) 자살예방사업
- 5)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
- 6)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

○ 시설현황

시설명	건물면적(m ²)	종사자	센터장	소재지
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	167.25	31명	김희숙	구미시 선산대로111(구미보건소 2층)

※ 센터장 1, 부센터장 1, 팀장 3, 팀원 26

○ 위탁기간: 2025. 1. 1. ~ 2029. 12. 31. (5년)

※ 최초위탁: 2000. 8.

○ 소요예산: 금1,915백만원(국923, 도395, 시597) ※ 2024년 기준

○ 위탁조건

- 1) 2024년 보건복지부 「정신건강사업 안내」에 의한 운영기준 준수
- 2)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서로 별도 협약 체결에 의함.
- 3) 수탁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, 대여, 재위탁 할 수 없음.
- 4) 현재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용된 인력의 고용 승계를 원칙으로 함.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

- 1) 선정방법: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
- 2) 수탁기관 자격
 - 정신건강증진시설(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)
 -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 설치 대학교
 -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- 3) 평가내용: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,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
- 4) 평가방법: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
- 적정성 검토: 적정 ※ 2024년 제3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-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
 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0조
 - 「구미시 정신건강증진 조례」 제5조
 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- 본 동의안은
 - 구미보건소 2층에 위치한 구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 (2020. 1. 1. ~ 2024. 12. 31.)만료에 따라 센터의 관리·운영을 다시 민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중증 정신질환자관리 및 정신건강사업,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 질환의 상담과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센터 근무 인력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센터 근로자를 위한 심리 지원 시스템 운영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